#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56

발의연월일: 2021. 6. 22.

발 의 자: 김예지 • 구자근 • 김상훈

김선교 · 김용판 · 이명수

이종성 · 지성호 · 최형두

추경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 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 기됨.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 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대응매뉴얼(이하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제12조에"를 "제10조의3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센터, 제12조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
  - 2.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실태조사의 항목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0조의3의 제목 중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사이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를 "사이버 학교폭력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 1. -----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강요·강제적인 심부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름,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 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및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 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1의2. • 1의3. (생략)

2. ~ 5. (생략) <신 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 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 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1. 2. (생략)
-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 1의4.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등) ① 교육부장 관은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 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 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대 응매뉴얼(이하 "사이버 학교폭 력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 · 배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매뉴 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小1年(4年5	막네쭈키천외기	己
치・기능)		


- 1. · 2. (현행과 같음)
- 3. ----

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 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 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u><신</u>설>

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 --제10조의3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제12조에

> 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 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센터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 구
- 2.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프로 그램의 개발・보급
- 4.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 한 상담,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 략)

8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⑨ ~ ⑫ (생 략)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 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 학교
	<u>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운영</u>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	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8
	태조사의 항목에 사이버 학교폭
	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	20조의3( <u>사이버</u> 학교폭력 등)
	<u>사이버 학교폭력에</u>